



Korean Tax Newsletter

2024년 7월

CONTENTS

세법개정

- 기획재정부, 2024년 세법개정안 발표

세무동향

- 국세청,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납세자 세정지원 실시

예규판례

○ 법원

- 사외유출금을 법인에 반환한 것이 귀속자의 종합소득세에 관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되는지 여부
부가 문제된 사건
- 당초신고에 대한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불복기간이 도과된 증액경정처분의 위법사유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조세심판원

- 옥외주차장은 쇼핑센터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서로 다른 종류의 감면·공제항목이 중복되는 경우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감면·공제를 이월된 감면·
공제보다 우선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 기획재정부

- 관계회사간 전출입한 경우 임금증가금액 계산 방법
- 고용중대 세액공제 적용시 근로계약 갱신으로 상시근로자에 해당하게 된 경우 상시근로자 적용 시
점
- 단기납 저해지 종신보험의 보험료를 저축성보험의 보험료 합계액 계산시 포함하는지 여부
-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적용여부

○ 국세청

- 재활용폐기물 처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설치한 포크레인 운반용 집계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
- 외국법인이 외국법령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현금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거주자인 주주의 배당소득 과세 여부
 -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자회사를 모회사가 무증자합병하는 경우 모회사가 보유한 자회사 주식 취득 가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

세법개정

기획재정부, 2024년 세법개정안 발표

정부는 7.25.(목)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4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세법개정안은 '경제의 역동성 지원', '민생경제 회복', '조세체계 합리화', '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에 중점을 두고 마련되었습니다. 본 세법개정안은 입법예고 및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9.2.(월)이전에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세법개정안 상세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법개정안 상세본 전문보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제의 역동성 지원

- **투자·고용·지역발전 촉진**
- 국가전략기술 등 R&D 세액공제·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①, §24①)
〈개정안〉 적용기한 연장 '24.12.31. ⇒ '27.12.31
〈개정이유〉 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
- 통합투자세액공제 증가분 공제율 상향(조특법 §24①)
〈현행〉 기업 규모별 추가분 공제율 차등 적용
〈개정안〉 추가분 공제율 일괄 10%로 상향
〈개정이유〉 기업의 투자 촉진
- 중소기업 기준 초과시 중소기업 졸업유예기간 연장(조특령 §2②)
〈개정안〉 졸업 후 3년 ⇒ 졸업 후 5년(코스피·코스닥 상장기업은 7년)
〈개정이유〉 중소기업의 성장사다리 강화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점감구조 도입(조특법 §10①)
〈개정안〉 중소기업 졸업 후 3~5년간 공제율 점감구조 도입
〈개정이유〉 기업의 성장 촉진 및 코스피·코스닥 상장기업에 대한 지원 합리화
- 통합투자세액공제 점감구조 도입(조특법 §24①)
〈개정안〉 중소기업 졸업 후 3년간 공제율 점감구조 도입
〈개정이유〉 기업의 성장 촉진
- 연구 전담요건 완화 및 공제대상 비용 범위 확대(조특령 §9, 별표 6)
〈현행〉
 - (인건비) 국가전략기술, 신성장·원천기술과 일반 R&D 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경우 일반 R&D 공제율 적용〈개정안〉
 - (인건비) 주된 시간을 국가전략기술 또는 신성장·원천기술 R&D 에 투입한 경우 투입시간만큼 안분 적용〈개정이유〉 기업의 연구개발 지원 확대

- 연구개발용 기계장치 가속상각 강화(법인칙 별표 2)
〈개정안〉 연구개발용 기계장치 내용연수 5년 ⇒ 3년으로 축소
〈개정이유〉 기업의 연구개발시설 투자 촉진
 - 통합고용세액공제 유형별 지원방식 개편(조특법 §29의 8)
〈개정안〉
 - (고용지원 대상 확대) 1개월 이상 1년 미만 기간제, 초단시간 근로자 포함
 - (계속고용 공제액 상향 + 탄력고용 정률지원 도입) 탄력고용 정률지원의 경우 계속고용인원 유지·증가시 지원〈개정이유〉 고용창출 지원 지속 및 납세협력 비용 경감
 - 통합고용세액공제 사후관리 폐지 및 고용지원 통합 등 제도 간소화(조특법 §29의 8)
〈현행〉 공제 후 일정 기간 고용유지 의무, 감소시 공제액 상당분 추징
〈개정안〉 계속고용인원 유지·증가시 1년 추가 공제(사후관리 폐지), 최소 고용증가 기준: 중견기업 10명, 대기업 20명
〈개정이유〉 고용창출 지원 지속 및 납세협력 비용 경감
 -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 지원요건 완화(조특법 §104의 15, 조특령 §104의 15)
〈개정안〉 외국자회사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요건 완화(둘 이상의 내국인이 공동으로 100% 출자한 경우 포함, 지분율 산정시 해당국 법률 등에 의해 해당국 정부 등이 의무 보유하는 지분 제외)
〈개정이유〉 공급망 안정화
- **기업경쟁력 제고**
-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밸류업·스케일업 우수기업 및 기회발전특구 이전·창업기업 지원(상증법 §18의 2)
〈현행〉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중소·중견기업(중견기업은 매출액 5천억원 미만)
〈개정안〉 밸류업 우수기업등은 중견기업 매출액 제한 폐지 및 가업상속공제한도 인상
〈개정이유〉 기업의 지속 성장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 최대주주등 보유주식 할증평가 폐지(상증법 §63③)
〈개정안〉 폐지
〈개정이유〉 기업 승계 지원
 - 해운기업 법인세 과세표준 특례 적용기한 연장 및 재설계(조특법 §104의 10①·⑧, 조특령 §104의 7④)
〈현행〉
 - (운항일 이익) 모든 선박에 동일한 운항일 이익 적용
 - (적용기한) '24.12.31.〈개정안〉
 - (운항일 이익) 기준선박이 아닌 선박에 대한 운항일 이익 30% 인상
 - (적용기한) '29.12.31.〈개정이유〉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
 -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취득 관련 과세특례 신설(조특법 §46의 9, 조특령 §43의 9 신설)
〈개정안〉 복수의결권주식 취득을 위한 현물출자시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개정이유〉 벤처기업 성장 지원

■ **자본시장 활성화**

- 주주환원 촉진을 위한 법인세 과세특례 신설(조특법 §100 의 33, 조특령 §100 의 33 신설)
〈개정안〉 주주환원 촉진을 위한 법인세 과세특례 신설
 - (대상) 코스피·코스닥 상장법인. 다만, 리츠 등 투자·배당 목적의 법인은 제외
 - (요건)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한 법인 & 주주환원 금액이 전년 대비 증가 및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 증가
 - (공제대상금액) [당해연도 주주환원금액 - (직전 3년 평균 주주환원금액) × 1.05] × (1 - 지배주주 등 지분비율)
 - (공제율) 5%
 - (공제한도) 당해연도 총 주주환원금액의 1%
 - (적용기한) '27.12.31.〈개정이유〉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주주환원 촉진

- 주주환원 확대기업의 개인주주 배당소득 과세특례 신설(조특법 §100 의 34, 조특령 §100 의 34 신설)
〈개정안〉 주주환원 확대 기업의 개인주주 배당소득 과세특례 신설
 - (대상) 주주환원 확대 상장기업의 개인주주(비거주자 및 법인주주 제외)
 - (과세특례) 주주환원 확대 기업으로부터 지급받은 현금배당의 일부를 분리과세
 - (적용기한) '28.12.31.〈개정이유〉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주주환원 촉진

-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소득법 제 2 장의 2, 조특법 §14 등)
〈개정안〉 폐지(현행 양도소득세 체계 유지)
〈개정이유〉 자본시장 발전 및 국내 투자자 지원

- 부동산투자회사 배당가능이익 범위 합리화(법인령 §73(2), §86 의 3①)
〈개정안〉 부동산투자회사 보유 자산 평가손익을 배당가능이익에서 제외
〈개정이유〉 부동산 간접투자 활성화

민생경제 회복

■ **결혼·출산·양육 지원**

- 결혼세액공제 신설(조특법 §95 신설)
〈개정안〉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에게 혼인신고를 한 해(생애 1 회)에 50 만원 세액공제 적용('24 ~ '26 년 혼인신고 분)
〈개정이유〉 결혼비용 지원

- 기업의 출산지원금 비과세(소득법 §12(3))
〈현행〉 비과세 한도 월 20 만원
〈개정안〉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하여,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공통 지급규정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지급(2 회 이내)받는 급여의 경우 전액 비과세('24 년 수당 지급 시에는 '21.1.1. 이후 출생자에 대한 지급분 포함)
〈개정이유〉 출산·양육부담 완화

■ **서민·중산층 부담 경감**

-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의 적용기한 연장 및 재설계(조특법 §19)

〈개정안〉 경영성과급을 지급한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법인세 세액공제 공제율 15% ⇒ 10%로 인하, 적용기한 '27.12.31.로 연장 / 성과공유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27.12.31.로 연장

〈개정이유〉 중소기업 성과공유 지원 및 제도 합리화

- 채용시 세제지원 대상 경력단절자 범위 확대(조특법 §29 의 8①·§30①, 조특령 §26 의 8③·§27①)

〈개정안〉

- (성별요건 완화) 남성 포함
- (업종제한 완화) 동일 업종 기업 취업 요건 폐지
- (퇴직사유 추가) 장애자녀는 연령제한 폐지, 가족구성원 돌봄 사유 추가

〈개정이유〉 경력단절자에 대한 지원 강화

■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 건설기계 처분이익 사업소득 분할 과세 특례 신설(조특법 §104 의 34 신설, 조특령 §104 의 31 신설)

〈개정안〉

- (적용대상) 건설기계 1 대를 양도한 후 해당 과세기간에 다른 건설기계를 대체취득한 사업자
- (과세특례) 양도차익에서 대체취득분에 해당하는 금액 중 1,000 만원 초과분을 3년 분할 산입
- (사후관리) 총수입금액 전액 산입 전 폐업 등의 경우 미산입금액 전액 총수입금액 산입 후 해당 세액 및 이자 상당 가산액 추가 납부

〈개정이유〉 개인사업자의 건설기계 처분에 따른 세부담 완화

조세체계 합리화

■ 세부담 적정화 및 조세제도 효율화

- 상속세 및 증여세 최고세율 및 과세표준 조정(상증법 §26)

〈개정안〉 2 억원 이하 10%, 2 억원 초과 5 억원 이하 20%, 5 억원 초과 10 억원 이하 30%, 10 억원 초과 40%

〈개정이유〉 상속·증여세 부담 완화

- 상속세 자녀공제금액 확대(상증법 §20①)

〈개정안〉 자녀공제 1 인당 5 천만원 ⇒ 1 인당 5 억원으로 확대

〈개정이유〉 중산층·다자녀 가구 세부담 경감

- 가상자산 과세 유예(소득법 §37⑤, 소득법 부칙, 법인법 부칙 등)

〈개정안〉 시행시기 유예 '25.1.1. ⇒ '27.1.1.

〈개정이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제도 시행 상황 등 고려

- 공시대상기업집단에 대한 법인세 중간예납 계산방법 합리화(법인법 §63 의 2①·②, §76 의 18①·②)

〈개정안〉 공정거래법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중소기업 규모 법인은 제외)에 속하는 내국법인과 연결 법인은 '해당 중간예납기간 법인세액 기준'으로만 계산

〈개정이유〉 기업실적에 따른 중간예납 납부방식 합리화

- 종업원 할인금액에 대한 근로소득 비과세 기준 마련(소득법 §12(3), §20①)

〈개정안〉 종업원등에 대한 할인금액을 근로소득으로 규정

- (종업원등) 자사 및 계열사의 종업원

- (대상금액) 종업원등이 자사·계열사의 재화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할인하여 공급받은 경우 할인받은 금액
 - (적용요건) 일반소비자와 차별하여 종업원등에게만 적용되는 할인금액일 것
 - (비과세 금액) Max(시가의 20%, 연 240 만원)
- 〈개정이유〉 종업원 할인금액에 대한 비과세 기준 합리화

○ 소득 대비 과다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기준 합리화(국조령 §55)

- 〈현행〉 금융지주회사 및 일반지주회사는 과다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적용 제외
〈개정안〉 금융지주회사만 적용 제외, 일반지주회사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적용
〈개정이유〉 국제거래를 통한 조세회피 방지

■ **비과세·감면 정비**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 합리화(조특법 §6)

- 〈개정안〉
- (감면율 정비) 업종 우대감면 적용기한 종료, 수도권 감면율 축소(50%, 100% ⇒ 25%, 75%), 고용증대 추가감면 상향(상시근로자 증가율×50% ⇒ 상시근로자 증가율×100%)
 - (적용기한 연장) '24.12.31. ⇒ '27.12.31.
- 〈개정이유〉 중소기업 창업 및 균형발전 지원, 과세형평 제고

○ 수도권 내 이전에 대한 감면대상 축소 및 감면요건 정비(조특법 §63, §63 의 2, 조특령 §60, §60 의 2)

- 〈개정안〉
- (이전지역 범위 합리화) 수도권 내(과밀억제권역 밖) ⇒ 수도권 인구감소지역
 - (대상 및 업종 요건 합리화) 대상: 이전 전 10 년 내에 감면을 적용받은 기업은 제외 / 업종: 이전 전후 동일한 업종 영위 ⇒ 이전 전 2 년이상(공장이전 중소기업은 1 년) 영위한 업종과 동일한 업종 영위
- 〈개정이유〉 지역 균형발전 지원 및 지방이전 지원세제 합리화

○ 중소기업 등 범위 합리화(조특령 §2①)

- 〈개정안〉 제외업종 및 범위제한 추가(부동산 임대업,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
〈개정이유〉 개인·법인간 과세형평 제고 및 제도 합리화

○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에서 임대사업자의 임대용 자산 배제(조특법 §146)

- 〈개정안〉 사후관리 규정 보완(임대사업자의 임대용 자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도 추정대상에 포함)
〈개정이유〉 투자지원제도 합리화

■ **세원투명성 제고**

○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대상 자산 확대(소득법 §97 의 2)

- 〈개정안〉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대상 자산에 '양도일 전 1 년 이내 증여받은 주식등' 추가
〈개정이유〉 조세회피 방지

○ 거주자 판정기준 보완(소득법 §5③~⑤, 소득령 §4②·③, 소득칙 §2①·②)

- 〈개정안〉
- (거주자의 정의) 1 과세기간 동안 183 일 이상 ⇒ 계속하여 183 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 포함

- (거주기간 인정 기준 구체화) 일시적 출국 사유 구체화(관광·질병 치료·친지방문 등 개인적인 사유, 출장·연수 등 직업·사업과 관련된 사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
 - (거주자·비거주자 전환 시 과세기간 명확화) 거주자 ⇒ 비거주자: 출국일까지와 출국일 다음날부터를 각각의 과세기간으로 봄 / 비거주자 ⇒ 거주자: 거주자가 된 날의 전날까지와 거주자가 된 날부터를 각각의 과세기간으로 봄
- 〈개정이유〉 거주자 판정기준 보완

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

■ 납세자 편의 제고

-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활성화(소득법 §160 의 3④, 법인법 §112 의 2④)
〈현행〉 종이영수증 또는 전자기부금 영수증 중 선택
〈개정안〉 직전연도 기부금영수증 발급 합계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법인은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의무화(발급기한: 기부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 월 10 일)
〈개정이유〉 기부자 납세편의 제고를 통한 기부 활성화
- 국외투자기구의 비과세 신청 및 원천징수 절차 간소화(소득법 §119 의 3, 소득령 §179 의 4, 법인법 §93 의 3, 법인령 §132 의 4)
〈개정안〉 사모국외투자기구도 공모국외투자기구와 동일한 절차 적용, 사모·공모국외투자기구 모두 원천징수 면제
〈개정이유〉 국외투자기구의 비과세 신청절차 간소화
- 비거주자·외국법인의 직접 경정청구 절차 신설(소득법 §119 의 3⑥·⑦, 법인법 §93 의 3⑥·⑦, 소득령 §179 의 4⑦·⑧, 법인령 §132 의 4⑦·⑧ 신설)
〈개정안〉 비거주자·외국법인의 직접 경정청구 근거 마련
 - (경정청구) 원천징수의무자 외 비거주자·외국법인이 직접 경정청구 가능
 - (청구자) 비거주자·외국법인, 적격외국금융회사 또는 소득지급자
 - (청구기한) 원천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1 일부터 5 년 이내
 - (필요서류) 경정청구서, 비과세 신청서, 거주자증명서 등〈개정이유〉 외국인투자자 납세편의 제고

■ 납세자 권익 보호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시 과태료 완화(국조령 §147)
〈개정안〉
 - (미신고·과소신고한 경우) 과태료율 및 한도 인하: 10~20%(누진율) ⇒ 10%(단일율), 20 억원 한도 ⇒ 10 억원 한도
 - (미소명·거짓소명한 경우) 과태료율 인하: 20% ⇒ 10%〈개정이유〉 과태료 부과기준 합리화
- 세액공제액에 대한 경정청구 허용(국기법 §45 의 2①)
〈개정안〉 세액공제 금액을 과소신고한 경우도 경정청구 대상으로 추가
〈개정이유〉 경정청구 확대를 통한 납세자 편의 제고

기타

■ **소득세 및 법인세**

- 연결법인에 대한 중소기업 규정 적용 방법 합리화(법인법 §76 의 22)
〈현행〉 연결집단이 중소기업 요건 충족하는 경우 연결법인에 대해 중소기업 규정 적용
〈개정안〉 연결집단이 중소기업 요건 충족하는 경우 중소기업인 연결법인에 대해 중소기업 규정 적용, 연결집단이 중견기업 요건 충족하는 경우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인 연결법인에 대해 중견기업 규정 적용
〈개정이유〉 연결납세방식 과세 합리화
- R&D 출연금에 대한 과세특례 인정범위 확대(조특법 §10 의 2①)
〈현행〉 기초연구법 등에 따른 출연금
〈개정안〉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으로부터 받은 연구개발 출연금도 대상 출연금으로 추가
〈개정이유〉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 지원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합리화(조특법 §12 의 4①, 조특령 §11 의 4④)
〈현행〉
 - (세액공제) 기술가치금액의 10%
 - (기술가치금액) 직접법, 간접법 중 선택 가능〈개정안〉
 - (세액공제) 기술가치금액의 5%
 - (기술가치금액) 직접법으로 계산(간접법 삭제)〈개정이유〉 기술혁신형 M&A 세제지원 실효성 제고

■ **양도소득세 및 상속·증여세**

- 토지·건물 일괄 취득·양도 시 안분계산 예외 신설(소득법 §100③, 소득령 §166⑦)
〈개정안〉 납세자가 구분한 토지·건물의 가액을 인정할만한 사유가 있으면 안분계산 제외(다른 법령에서 토지·건물의 양도가액을 정한 경우, 건물이 있는 토지 취득 후 건물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
〈개정이유〉 과세기준 합리화
- 특정법인과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 범위 확대(상증법 §45 의 5①)
〈개정안〉 증여의제 과세대상 거래에 ‘자본거래를 통한 이익 분여’ 추가
〈개정이유〉 증여의제 범위 조정

■ **국제조세**

-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비과세·면제신청서 및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화(소득법§156 의 2, 소득령§216 의 2, 법인법§98 조 4, 법인령§162 의 2)
〈개정안〉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비과세·면제 신청 의무화,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화
〈개정이유〉 국내원천소득 세원관리 강화

■ **국제 제반 분야**

- 예외적 경정청구기간 합리화(국기법§45 의 2)
〈개정안〉 경정청구 기간 합리화

- (과세관청의 증액결정·경정처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 일 이내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 개월 이내
〈개정이유〉 경정청구 관련 제도 합리화

세무동향

국세청,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납세자 세정지원 실시

국세청은 '24.7.15. 호우 피해지역인 충북 영동군 등 5개 지자체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해당 지역에 소재한 납세자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의 세정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국세청 보도자료\(2024.7.16.\)](#)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보도자료\(Link\)](#)

○ 호우 피해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 충북 영동군
- 충남 논산시·서천군
- 전북 완주군
- 경북 영양군 입암면

○ 세정지원 내용

-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의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며, 고지 받은 국세의 경우에도 최대 2년까지 납기연장을 신청 가능
-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로서 압류 및 압류된 재산의 매각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최대 2년까지 유예 가능
- 세무조사 통보를 받은 납세자가 세무조사 연기 또는 중지를 신청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검토

예규판례

[법원] 사외유출금을 법인에 반환한 것이 귀속자의 종합소득세에 관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국승)

(대법원 2024.6.17. 선고 2021 두 35346 판결, 파기환송)

■ 쟁점

실질적 경영자와 공모하여 법인의 자금을 횡령한 귀속자가 형사재판 과정에서 그 횡령금 상당액을 피해법인에 지급한 것이 소득처분으로 성립한 소득세 납세의무에 관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되는지 여부(소극)

■ 사안

원고가 그 부친이 실질적으로 지배·경영한 회사들로부터 상표권 사용료 명목으로 돈을 인출하여 횡령한 것과 관련하여 소득처분(기타소득)에 의해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는데, 관련 형사재판 진행 중 그 횡령금 상당액을 피해 회사들에 지급한 후 대법원 2014 두 5514 전원합의체 판결(뇌물 등 위법소득에 있어 몰수·추징이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된다고 본 판결)의 법리를 원용하여 그러한 횡령금 상당액의 지급이 소득세 납세의무에 관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임

판결요지

각 규정의 내용, 체계 및 취지, 특히 입법자는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기 위하여 후발적 경정청구제도를 마련하면서도, 조세법률관계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령에서 열거한 일정한 후발적 사유로 말미암아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를 제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와 공모하여 법인의 자금을 횡령한 경우, 과세관청이 횡령금 상당액을 사외에 유출되었다고 보아 소득처분을 하여 그 귀속자에게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이상, 사후에 그 귀속자가 형사재판에 이르러 해당 횡령금 상당액을 피해법인에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국세기본법 제 45 조의 2 제 2 항 등의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함

대법원 2015. 7. 16. 선고 2014 두 5514 전원합의체 판결 등은 사안을 달리하므로 이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음. 위 판결 등의 법리는, 수뢰·알선수재·배임수재 범행으로 얻은 뇌물 등 위법소득에 대하여 일단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 위 뇌물 등에 대하여 몰수·추징을 당하였다면,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되어 그 소득이 종국적으로 실현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납세자는 그 몰수·추징을 사유로 후발적 경정청구를 하여 납세의무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취지임. 뇌물 등은 필요적 몰수·추징의 대상(형법 제 134 조, 제 357 조 제 3 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13 조)으로서 수뢰자 등이 뇌물 등을 수수할 때부터 이미 그 소득에는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내재되어 있음이 분명함. 반면 횡령금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국가에 의한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지 않고, 그 반환 여부 또는 반환을 위한 구제절차의 진행 여부 등이 귀속자나 피해법인 등 당사자의 의사에 크게 좌우됨. 특히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가 가담하여 사외유출한 횡령금의 경우, 피해법인이 자발적으로 그 반환을 구할 가능성을 상정하기 어려우므로, 그 소득에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다고 단정할 수 없음

나아가 위법소득을 현실로 지배·관리하면서 이익을 향수하고 있는 귀속자가 형사재판에서 피해법인에 횡령금 상당액을 지급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위법소득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포기하는 대신 양형상의 이익이라는 무형의 이익을 얻기 위한 행위이므로, 이 점에서도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되어 그 소득이 종국적으로 실현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법원] 당초신고에 대한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불복기간이 초과된 증액경정처분의 위법사유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국패)

(대법원 2024.6.27. 선고 2021 두 39997 판결, 상고기각)

■ 쟁점

당초신고 후 증액경정처분이 있고, 증액경정처분에 따라 증가된 세액에 대하여 불복기간 초과로 불가쟁력이 발생한 경우, 원고가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증액경정처분의 사유를 위법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사안

원고가 최초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이후 간주외국납부세액 공제를 부인하는 내용의 증액경정처분이 있었고, 그 증액경정처분에 대한 90 일의 불복기간은 초과하였는데, 원고는 당초신고에 대한 경정청구기간(5년) 내에 경정청구 및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불가쟁력이 발생한 증액경정처분에 있는 위법사유, 즉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여 달라고 주장한 사안임

판결요지

구 국세기본법(2019. 12. 31. 법률 제 16841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45 조의 2 제 1 항 본문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 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제 1 호에서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를 들고 있음. 그리고 구 국세기본법 제 45 조의 2 제 1 항 단서(이하 ‘이 사건 단서규정’이라 한다)는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해서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 일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과세관청의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해서는 납세자의 경정청구기간을 제한하고 있음

관련 규정의 문언, 체계 및 경정청구제도의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납세자가 그 후 이루어진 과세관청의 결정이나 경정으로 인한 처분에 대하여 소정의 불복기간 내에 다투지 아니하였더라도 5 년의 경정청구기간 내에서는 경정청구권을 행사하는 데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음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 두 12822 판결 참조)

그리고 통상의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와 마찬가지로 감액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소송 역시 그 거부처분의 실제적·절차적 위법사유를 취소 원인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심판의 대상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인 존부이므로,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인정이 위법하다고 내세우는 개개의 위법사유는 자기의 청구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한 점(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7 두 58991 판결 참조), 과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과 경정청구는 모두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존부를 정하고자 하는 동일한 목적을 가진 불복수단이므로, 납세자로 하여금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사유에 대하여는 취소소송으로써, 과다신고사유에 대하여는 경정청구으로써 각각 다투게 하는 것은 납세자의 권익보호나 소송경제에 부합하지 않는 점(대법원 2013. 4. 18. 선고 2010 두 1173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납세자는 감액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당초 신고에 대한 과다신고사유뿐만 아니라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사유도 함께 주장하여 다룰 수 있음

다만, 증액경정처분에 대한 불복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이 사건 단서규정에 따라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관하여는 취소를 구할 수 없고,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한도로 하여서만 취소를 구할 수 있음 따름임

[조세심판원] 옥외주차장은 쇼핑센터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3 서 3415, 2024.5.29., 경정)

■ 쟁점

옥외주차장을 쇼핑센터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 사안

청구법인은 백화점, 아울렛, 마트, 슈퍼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쇼핑센터 A, B, C(이하 각각 “A”, “B”, “C”이라 하고, 이를 합하여 “쟁점쇼핑센터”라 한다)를 운영하면서, 인접필지의 토지를 옥외주차장(이하 위 순서대로 각각 “쟁점옥외주차장①”, “쟁점옥외주차장②”, “쟁점옥외주차장③”이라 하고, 이를 합하여 “쟁점옥외주차장”이라 한다)으로 사용하고 있음. 청구법인은 쟁점옥외주차장을 「종합부동산세법」 제 11 조 및 「지방세법」 제 106 조 제 1 항 제 1 호의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2017~2021 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2022.9.28. 「지방세법」 제 106 조 제 1 항 제 2 호의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한다며 처분청에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환급해 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11.17. 이를 거부하였음.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19. 심판청구를 제기함

결정요지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그 중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한 취지는 나대지의 보유를 억제하고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입법 취지를 감안하면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함은 건축물의 효용을 위하여 공여되는 토지로서 건축물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토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건축물의 효용에 공여되는 토지인지 여부는 건축물 신축 당시 토지와 건축물과의 관계, 건축물과 토지의 불가분성이 있는지 여부, 외부올타리 등으로 건축물과 토지가 다른 부동산과 확연히 구분되어 동일한 경제적 효용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인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조심 2014 지 539, 2015.7.23.,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쟁점옥외주차장이 쟁점쇼핑센터의 부속토지에 해당되어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옥외주차장①의 경우 A 와는 소유자가 상이할 뿐만 아니라 그 취득의 시기가 상이한 점, 쟁점옥외주차장①과 A 은 편도 2차선 도로로 구분되어 있고, 그 도로는 도시·상업지역에 위치하여 교통량이 상당할 것으로 보여 A 의 효용을 위해 공여되는 토지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옥외주차장①이 A 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다만 쟁점옥외주차장②·③의 경우 처분청은 이를 B 및 C 의 부속토지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쟁점옥외주차장②·③은 B 및 C 과 연접하여 별도의 경계 없이 하나의 울타리 안에 위치하고 있고, 그 취득목적은 B 및 C 의 이용자들을 위한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함으로 보이며, 실제로 B 및 C 의 주차장으로 사용 중인 것으로 확인되는 점, 특히 B 의 경우 재산세 과세관청에서도 쟁점옥외주차장②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환급한 점, B 및 C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쟁점옥외주차장②·③의 면적을 합산하여도 별도합산과세대상 적용한도 이내인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옥외주차장②·③은 B 및 C 의 각 부속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옥외주차장①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쟁점옥외주차장②·③은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서로 다른 종류의 감면·공제항목이 중복되는 경우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감면·공제를 이월된 감면·공제보다 우선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조심 2023 서 10466, 2024.6.25., 기각)

■ 쟁점

서로 다른 종류의 감면·공제항목이 중복되는 경우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감면·공제를 이월된 감면·공제보다 우선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 사안

청구법인은 2002.2.25.부터 게임개발업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로, 2018~2021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감면·공제항목(5 개) 중 농어촌특별세(이하 “농특세”라 한다)가 비과세되는 감면·공제인 ①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② 외국납부 세액공제 및 ③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우선적용하여 신고하였음. (...)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2.10.27.부터 2023.1.13.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2018~2021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최저한세 적용 여부 구분 없이 임의적으로 감면·공제를 적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감면·적용 순서를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①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② 고용증대기업 세액공제(농특세 과세대상), ③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우선적용하여 고용증대기업 세액공제액의 20%에 해당하는 농특세를 부과하였음. (...) 처분청은 이를 반영하여, 2023.3.6. 청구법인에게 2018~2021 사업연도 농특세 합계 000 원 등을 결정(경정)·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5.23. 이의신청을 거쳐 2023.10.18. 심판청구를 제기함

결정요지

조특법 제 132 조 제 1 항 제 3 항은 「법인세법」 제 59 조 제 1 항 본문상의 ‘적용순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라 할 것인바, 해당 규정에 따라 감면·공제대상 중 최저한세 적용대상이 있는 경우라면 그 대상이 당기 또는 이월된 것인지 관계없이 조특법 제 132 조 제 1 항의 최저한세 적용대상 감면·세액공제를 먼저 적용한 후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는 감면·세액공제를 적용하여야 할 것인 점,

조특법 제 144 조 제 2 항은 실체적 규정에 대한 절차적 또는 보충적 사항을 정한 보칙규정으로서 공제할 금액 중 이월된 미공제 금액이 있는 경우에 납세자에게 유리하도록 이월된 미공제 금액을 먼저 공제하기 위한 규정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최저한세 적용대상인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고용증대기업 세액공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우선 적용함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고용증대기업 세액공제’ 관련 농특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기획재정부] 관계회사간 진출입한 경우 임금증가금액 계산 방법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80, 2024.5.21.)

■ 질의

중소기업이었던 미환류소득 계산과 관련하여 관계회사간 진출입 근로자가 있는 경우 임금증가금액 계산방법

※ 상기 관계회사 진출입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전출법인과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전입법인과 근로계약을 새로 체결하는 '전적(轉籍)'에 해당함

- (1 안) 전출자를 종전부터 전입법인에서 근무한 것으로 보아 전출법인이 부담한 급여를 전입법인에서 포함하여 임금증가금액 계산
- (2 안) 전입법인과 전출법인이 각각 부담한 급여를 기준으로 임금증가금액 계산(전출자를 전출법인의 퇴사자 및 전입법인의 신규입사자로 봄)

회신

(2 안)

전입법인과 전출법인이 각각 부담한 급여를 기준으로 임금증가금액 계산(전출자를 전출법인의 퇴사자 및 전입법인의 신규입사자로 봄)

[기획재정부] 고용증대 세액공제 적용시 근로계약 갱신으로 상시근로자에 해당하게 된 경우 상시근로자 적용 시점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511, 2024.6.19.)

■ 질의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29의7) 적용시, 연속된 계약갱신으로 근로계약기간이 총 1년 이상이 되어 상시근로자에 포함된 근로자의 상시근로자 적용 시점

- (갑설) 최초 근로계약기간부터 적용
- (을설) 갱신된 근로계약기간부터 적용

■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최초 기간제근로자 채용시 3 개월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최초 계약 종료시 9 개월 연장 계약을 체결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 29 조의 7 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시 상시근로자 여부는 제 23 조 제 10 항 제 1 호에 따라 판단하고 있으므로,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는 것임. 상시근로자 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 26 조의 7 제 7 항에 따라 매월 말 현재를 기준으로 계산하고,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이 된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의 합계가 1년 이상이 되게 하는 계약갱신이 발생한 월에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는 것임

[기획재정부] 단기납 저해지 중신보험의 보험료를 저축성보험의 보험료 합계액 계산시 포함하는지 여부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375, 2024.7.9.)

■ 질의

단기납 저해지 중신보험의 보험료를 보험료 합계액 한도 계산시 포함하는지 여부

회신

1. 단기납 저해지 환급형 중신보험이 사망·사고만을 보장하며 저축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순수보장성 보험인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 25 조 제 3 항 제 2 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2 조의 2 에따라 해당 보험의 월 납입 보험료는 저축성보험의 보험료 합계액 계산에서 제외되는 것임
2.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 보험 상품의 해지환급률, 보험료 납입규모, 특약유형 등을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기획재정부]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적용 여부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754, 2024.7.15.)

■ 질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 14 조의 3 의 규정에 따른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기한 후 특례적용신청서 제출로 같은 법 제 16 조 3 의 분할납부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사실관계

- 신청인은 A 법인에 입사한 후 두 과세기간에 걸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A 법인의 신주를 각각 취득
- 신청인은 행사이익이 비과세 특례 한도 내로 판단하여 행사이익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고 납부특례도 신청하지 않음
- 이후 각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하여 매매사례가액 등이 존재함을 인지하였고, 향후 기한후신고 및 수정신고(이하 "기한후 신고 등") 절차를 통해 납부특례를 신청할 예정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 14 조의 3 제 2 항에 따른 특례적용신청서를 같은 항 또는 같은 조 제 5 항에서 규정한 기한내에 제출하지 않더라도 기한 후 신고 등을 통해 「조세특례제한법」 제 16 조의 3 에 따른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음

[국세청] 재활용폐기물 처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설치한 포크레인 운반용 집계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전-2024-법규법인-0160, 2024.6.20.)

■ 질의

재활용폐기물 처리업체가 포크레인에 운반용 집계를 설치한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 공제대상 자산 해당 여부

■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고 재활용 폐자원을 수집 및 가공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 2023.1월 포크레인(굴착기)에 스크랩 운반용 집계를 설치한 후 해당 포크레인에 대한 구조변경을 완료함(해당 포크레인은 2022.10월 취득함)

회신

재활용폐기물 처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포크레인에 운반용 집계를 설치한 경우로서 동 시설(운반용 집계가 설치된 포크레인을 말함)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활용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 24조 제 1항 제 1호 나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 21조 제 3항 제 1호에 따라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귀 시설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활용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법률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국세청] 외국법인이 외국법령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현금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거주자인 주주의 배당소득 과세 여부

(서면-2024-법규소득-0424, 2024.6.25.)

■ 질의

외국법인이 외국법령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현금배당을 하는 경우, 이를 수령하는 주주의 「소득세법」 제 17조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실관계

- 노르웨이 법인인 A(이하 “외국법인”)는 오슬로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으로, 이사회는 ‘23년 중 현금배당을 결의하였는데, 공시자료에 의할 때 위 배당(이하 “쟁점배당”)의 재원은 기타납입자본금에 해당하고, 노르웨이에서는 쟁점배당을 자본의 반환으로 보아 배당금 지급에 따른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함
- KKK 주식회사(이하 “질의법인”)는 유가증권의 매매·중개 등 증권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소득세법」 제 127조 제 2항에 따라, 소액 주주인 국내투자자들에게 쟁점배당에 따른 금원을 지급할 때, 이를 같은 법 제 17조에 따른 배당소득으로 보아 같은 법 제 127조 제 1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함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외국법인이 외국법령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주주인 국내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금은 「소득세법」 제 17조 제 1항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국세청]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자회사를 모회사가 무증자합병하는 경우 모회사가 보유한 자회사 주식 취득가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서면-2023-법규법인-2491, 2024.6.27.)

■ 질의

완전자본잠식상태인 완전자회사(피합병법인)를 완전모회사가 무증자합병함에 따라 완전모회사가 보유한 피합병법인의 주식이 전부 소멸된 경우 피합병법인 주식 취득가액의 세무처리방법

- (갑설) 자본거래로 손금산입하지 않음
- (을설) 손익거래로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 사실관계

- 질의법인('A 법인')은 자본잠식상태에 있는 완전자회사인 (주)**엔지니어링('피합병법인', 'B 법인')을 흡수 합병('쟁점 합병')함
- 질의법인은 쟁점 합병 시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합병을 하였으며, 이로 인해 질의법인이 보유한 B 법인 주식은 소멸함
- 쟁점 합병은 완전모·자회사간 합병으로 적격합병에 해당함
- 쟁점 합병과 관련하여 질의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자산 및 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승계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였으며, 질의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였으나, 회계상 이를 전액 감액하여 합병 시 장부가액으로 계상함
- 합병 전 질의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주식감액분에 대한 손금불산입(유보)로 인식, 관리하였으며, 무증자 합병 시 양편조정함

회신

완전모회사가 완전자회사를 흡수합병함에 있어 완전모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완전자회사의 주식(이하 "포함주식")에 대하여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않고 소각하는 경우 해당 완전모회사가 합병등기일 전에 포함주식과 관련하여 손금불산입(유보)한 금액은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해당 금액을 손금산입(△유보) 및 손금불산입(기타)하는 것임

Contacts

상기 내용에 관해 궁금하신 사항을 아래에 기재된 연락처로 문의 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권지원 Tax & Legal Leader

+82 (2) 6676-2416

jekwon@deloitte.com

김경조 Partner

+82 (2) 6099-4279

kyungjokim@deloitte.com

정호석 회계사

+82 (2) 6099-4734

hosjung@deloitte.com

※ 본 뉴스레터에 게재된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공식적인 견해나 어떤 구체적 사안에 대한 의견을 드리는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개별적 사안에 대한 적용은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80 개 이상 국가의 세금 뉴스 및 정보를 보려면 지금 tax@hand 를 [방문](#)하거나 tax@hand 모바일 앱을 [다운로드](#)하세요”

메일 수신을 원치 않으시면 [수신거부](#)를 클릭하여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Back to top](#)